

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'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'(이하 "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
가.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등 비용 등,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면여부 등을 확인한다.

2. 계약기간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.
- ③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재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3. 계약목적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이용계약,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,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에 따른다.

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 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
-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(15%)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 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-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(6%, 9%)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(0%)이다.
-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. 월이용료부담액은 운영규정첨부1 서식과 같다. (단 등외자는 시설장이 정한다.)
- ⑤ 식재료비는 1일 2식으로 하며 1끼당 3,000원으로 한다.
간식은 1일 2회로 하며 비용은 500원으로 한다.

⑥ 이용일수에 따라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하면 공단지원 없이 100% 본인이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
5. 기타 비용부담

-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(또는 보호자)는 매 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그러지 못할 경우 기관이 대신 지불하고 기관통장으로 계좌이체한다.
-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기관이 대신 지불하고 기관통장으로 계좌이체한다.

수급자 자격 비율	본인부담금
일반대상자	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일반경감대상자 (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40%)	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
일반경감대상자 (일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60%)	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	장기요양급여비용의 0%
등급외자	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○ 비급여항목(원)

항목	식비(1식당)	간식(2회)	이미용료(1회당)	기타(보호자요청)
금액	3,000	500	커트봉사무료/실비	실비

- 2) 비급여부분 : 홈페이지에 공시 및 개별 공지한 식재료비를 포함한 금액
 본기관은 위탁급식 이용:1식3,300원으로 기관에서300원 보조해드립니다.
 단, 개별욕구에 따른 비용 발생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: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-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.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 :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
-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의 부담의무
- ③ 이용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센터에 통보 의무
- ④ 급여서비스의 규정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 요구
- ⑤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통보 의무